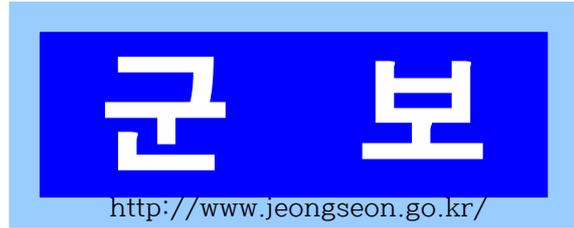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86호 2016. 4. 1.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95호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496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497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12
- 정선군 조례 제2498호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2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22호 2016년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고시 2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23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28
- 정선군 공고 제2016-255호 2017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공동참여기업 모집 공고 31
- 정선군 공고 제2016-283호 증산농공단지 소유자 산업집적법 시정명령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48
- 정선군 공고 제2016-284호 정선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50

조 례

제228회 정선군의회(2016. 3.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95호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정선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 단체를 말한다.

1.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생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육성사업이 포함된 정선군 산불방지대책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비용 등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 2. 산불 진화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건조한 기후 및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매년 증대하고 있어,
- 우리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불방지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 등 지원사항(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포상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228회 정선군의회(2016. 3.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6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리랑센터를 설치한다.
② 아리랑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선읍 애산로 5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아리랑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극·무용 및 음악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2장 개관·휴관 및 사용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② 아리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리랑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공연·전시(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아리랑센터를 공연등의 목적으로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1조에서 같다)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단체등이 신청할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
5. 정치적 목적의 공연등인 경우
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등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시간) ① 아리랑센터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연습실 및 부대시설·편의시설도 또한 같다.

사용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한 차례 사용으로 본다.

제3장 사용료

제9조(징수)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및 납입고지서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0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군 문화예술단체
2. 시·도교육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반환)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

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장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설비 및 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해당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되, 그 비용을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군수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공연등의 홍보물을 아리랑센터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목적인 그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범위 이상으로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한 후 그의 귀책사유로 공연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제14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리랑센터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아리랑센터 또는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5장 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려는 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2.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리랑센터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아리랑센터의 개관일부터 그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아리랑센터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오전 (09:00 ~ 12:00)	90,000	
	오후 (13:00 ~ 17:00)	110,000	
	야간 (18:00 ~ 22:00)	130,000	
연극/무용 연습실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3:00 ~ 17:00)	50,000	
	야간 (18:00 ~ 22:00)	50,000	
음 악 연 습 실	오전 (09:00 ~ 12:00)	35,000	
	오후 (13:00 ~ 17:00)	35,000	
	야간 (18:00 ~ 22:00)	35,000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의 경우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23:00이후)의 경우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악 기	피아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난 방	공연장	1시간	8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극/무용 연습실	1시간	5,000	
	음악 연습실	1시간	5,000	
냉 방	공연장	1시간	60,000	
	연극/무용 연습실	1시간	5,000	
	음악 연습실	1시간	5,000	
조 명	무대조명	1시간	100,000	연습의 경우 무 대 조 명 은 50퍼센트 적용
	드라이아이스	1회	30,000	
	스모그	1회	30,000	
음 향	유선마이크	1회	30,000	3개 기본
	무선마이크	1회	20,000	
	녹화/녹음	1회	30,000	
인력지원	효과기기 운용	1인/일	60,000	-기본: 09시~18시 -18시~22시: 추가 30,000원/회
	무대지원	1인/일	60,000	
	조명지원	1인/일	60,000	
	음향지원	1인/일	60,000	
그 밖의 부대시설	영화촬영	1회	50,000	중계료 및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TV(중계. 비디오녹화)	1회	30,000	
	라디오중계	1회	30,000	

제 정 이 유

- 아리랑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아리랑센터의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리랑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 아리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규정함 (안 제9조)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아리랑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228회 정선군의회(2016. 3.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7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이 설립하는 아리랑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아리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구입,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수장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창고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수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는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기본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 부대시설: 부속설비,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②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뮤지엄 숍
2. 카페테리아
3.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업무)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리랑 관련 사료·자료와 고고·미술·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수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향토사의 조사·연구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사회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증자에게는 기증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해진 사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관람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관람(이하 “관람”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반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장 수장품

제11조(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수장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고 전시 또는 대여 해 준 것 외의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3조(대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4조(대여조건) ①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해당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제16조(허가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아리랑 관련 자료 전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
-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제17조(허가 및 변경) ① 제16조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 및 그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 전달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해당 대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 전에 대관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때
-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대관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2. 박물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1조(손해배상)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장 관리 운영

제22조(관장)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발전을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고 박물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을 둘 경우에는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 2.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자문
-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⑥ 군수는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 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의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현장 및 서류를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등)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박물관에 두는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관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관장이 주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군수,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장기치료·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박물관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의 개관일부터 그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아리랑박물관 시설 대관료(제20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기획전시실	76.51m ²	1일	35,000	○ 기준일 1일 미만 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정선아리랑전시문화센터 내 아리랑 박물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며,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경우 기증자에게는 평가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사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함(안 제8조)
- 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대관료를 35,000원으로 정함(안 제20조)
- 박물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제228회 정선군의회(2016. 3.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8호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를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위임된” 을 “제41조에 따라”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월액등의” 를 “월액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해당분을” 을 “전부 또는 일부를” 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임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p> <p>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u>월액등의</u>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분</u>을 환불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u>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41조에 따라</u> ----- ----- -----.</p> <p>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월액 등의</u> ----- -----.</p> <p>③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전부 또는 일부를</u> -----.</p> <p>1. 2. (현행과 같음)</p> <p><u>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u></p>

개 정 이 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정비대상 과제로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 ⇒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6-22호

2016년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고시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30.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사항

□ 관련근거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제8조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품목마다 99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출하를 한 농가 등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총 6개 품목을 지정함.

□ 지원대상 품목 : 6개 품목

(콩/백태 대립종·중립종, 풋찰옥수수, 황옥, 건고추, 마늘, 피수수)

2. 지원대상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사항

□ 관련근거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제11조

대상품목	단 위	최저가격(원)	비 고
콩(백태)	대립종/80kg	240,000	
	중립종/80kg	220,000	
팥찰옥수수	접/100개	31,000	
황 옥	40kg	37,600	
건 고 추	1kg	10,500	
마 늘	접(3.5kg)	12,210	
피 수 수	40kg	70,000	

3.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원 · 정산

- 지역농협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장에게 차액을 지원
- 지원받은 지역농협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 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4.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신청서 : 붙임서식<서식1>

< 서식1 >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 여 능 가 수		
	성 명 (대표자)				연 락 처		
	주 소						
계통출하 실 적	대상작물		출하일	계 통 출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합 계						
차액지원 신청금액	품목명	농가수	출하량	최저가격 (원)	출하가격 (원)	차액지원(원)	
						계	행 정 농 협
<p>상기와 같이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가격 차액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농업협동조합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수 귀하</p>							
첨 부	<p>1. 계통출하 증명서 사본 1부.</p> <p>2. 통장사본 1부. 끝.</p>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6-23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 3. .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동읍	리도	나상선	북평 207호	나전리 244	나전리 산110	4.5 (0.48)	나전리 100	4.0	4.0	도로 확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안전건설과)

3. 사업시행기간 : 2016. 03. ~ 2016. 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북평면 리도 207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	(㎡)	성명	주 소	지분	
1	북평면 나전리	119-1	구	31,083	324	국(기획재정부)			
2	북평면 나전리	107-1	도	763	1	국(기획재정부)			
3	북평면 나전리	107	전	502	140	김인기	북평면 남평리 579		
4	북평면 나전리	산195	임	218,578	58	김옥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05-8 롯데하우스 1-지1		
5	북평면 나전리	105	전	288	123	김인기	평면 남평리 579		
6	북평면 나전리	산132	임	31,736	225	김인기	북평면 남평리 579		
7	북평면 나전리	산100 -1	임	12,075,57 5	756	국(산림청)			
8	북평면 나전리	산134	임	595	144	국(산림청)			
9	북평면 나전리	100-1	구	2,718	45	국(건설교통부)			
10	북평면 나전리	100	전	3,660	57	김인기	북평면 남평리 579		
11	북평면 나전리	102	전		17	미상			
계				12,365,498	1,890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정선군 공고 제2016-255호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동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신청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공동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목 적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위한 공동참여기업선정
- 사 업 명 : 2017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 대 상 : 고한사북보건지소 69개 기관 및 주택
- 사업내용 : 태양광 64개소, 태양열 19개소, 소형풍력 4개소, 설계및모니터링 1식
 ※ 사업대상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사업선정 및 종료일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에 따름

2. 신청자격 :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참여기업

3. 선정방법

- 공 고 : 정선군 홈페이지 게시
- 대상마을에 대한 융·복합설계 및 설치방안을 기획·선정 후 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정선군청(지역경제과)에 제출
- 전문분야가 상이한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현장조사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사업 대상지역 확인 요망
-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비 분담 없음

4.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 융·복합지원사업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진행하되 설치 기업과 무관한 일부 항목 제외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 정부권장구매 대상기업(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2점 가점
- 컨소시엄 주관기업 강원도 지역 업체(본사) 5점, 공장설립(운영) 기업 3점 가점
-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강원도) 업체 구성시 2점 가점

5. 신청 및 평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6. 4. 1 ~ 4. 29(14:00한)	- 8부
○ 사업계획서 등 평가	2016. 4. 30. ~ 5. 2	
○ 기업선정 및 통보	2016. 5. 3	- 협약(안)협의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2016. 5. 4. ~ 5. 12	
○ 공모사업신청	2016. 5. 13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별첨1>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공문과 함께 8부 제출(PPT파일 함께 제출(USB메모리, CD 등))
 - ※ 전문분야가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 가능(계량평가서류 별도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또는 FAX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전략산업팀
- 문 의 처 : 유선명 주무관(☎ 033-560-2434)

7. 유의사항

- 참여기업 선정시 참여기업과 협약체결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본 컨소시엄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위한 것이나 미 선정시 사업선정 시까지 유지한다.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 자 체 / 공 공 기 관	민 간	총 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 니 터 링 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첨부서류 3번 관련)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권소시업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융·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마.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9. 용·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첨부서류 : 1. 자체 사업공모 증빙자료

2. 설치예정 장소 및 건물 사진
3. 수요자명·연락처·주소 등 수요처에 대한 세부자료
4.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 및 단가
5.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6.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실적증명서
7.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아래의 별첨 서류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별첨 : [1-1~1-3]설비내역,계량점수항목(총괄표).xls

[2]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및기업신용도).hwp

< 별 첨 2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량 평가	시공 능력*	기술인력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
		시공실적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사업비 산정	정부지원금외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율
		설치대상(감점)	설치대상 시설의 단일성
		에너지원(가점)	우선 지원대상 에너지원
비계량 평가 (사업 내용)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재원조달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의 구체성
		지자체지원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적정성
	인프라 적정성	지역특성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민원, 인·허가사항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인프라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사업 추진 구체성	기술적 타당성 등	융·복합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공사·운영계획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융·복합 기대효과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에너지이용 편의 및 환경개선효과 등

* 시공능력의 경우 설비 시공기업 점수에 각각의 참여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환산 평가

< 별 첨 3 >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

-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4년도 정부 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 선정 기준 준용

[양식2] 계량평가 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 및 기업신용도)

※ 작성시 주의사항

- 사업지원공고문의 “<별첨3>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을 반드시 필독 후 정확히 작성할 것
- 1개의 참여기관이 2개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원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할 것 (예. 태양광 증빙자료(1~3번), 태양열 증빙자료(1~3번))

□ 주관기관명 :

참여기관명	설치담당 에너지원	15년 및 1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유무(○/×) (단, 설치예정인 에너지원에 대한 선정 유무임)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총괄표(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명, ()월, 기능사()명, ()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월)
산업기사 이상	1				
	2				
	3				
	4				
	5				
	6				
	7				
	8				
기능사	9				
	10				
	11				
	12				
	13				
	14				
	15				
	16				

나. 증빙서류(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성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1			
2			
3			
4			
5			
6			

번호	성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7			
8			
9			
10			
11			
12			

번호	성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13			
14			
15			
16			

2. 시공실적

가. 총괄표

번호	설치내용	설치완료일자	설치용량	설치개소
1				
2				
3				
4				
5				
6				
7				
8				
9				
10				

나. 증빙서류(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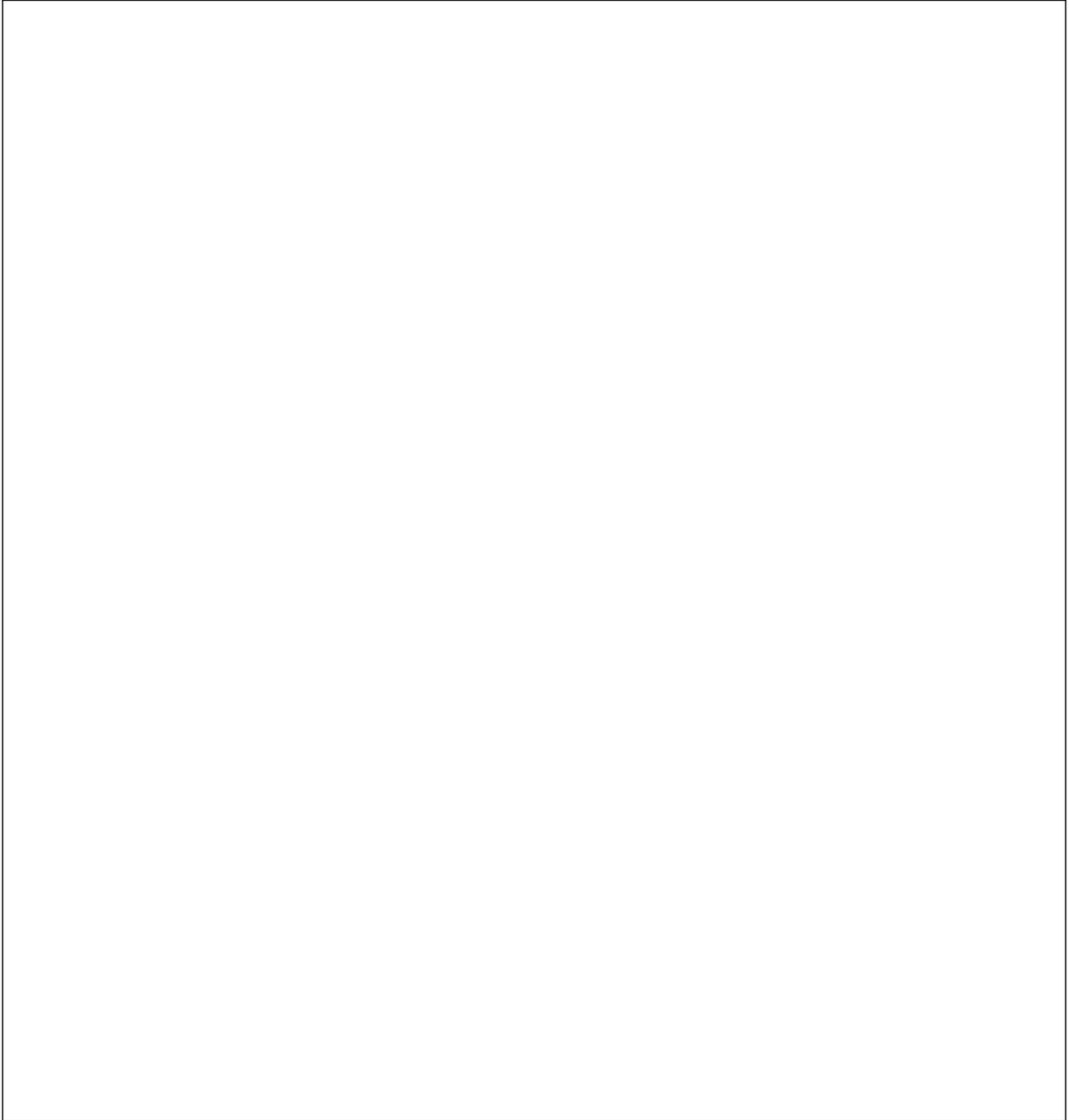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1(이미지파일)	증빙서류2(이미지파일)
1			
2			
3			
4			
5			
6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1(이미지파일)	증빙서류2(이미지파일)
1			
2			
3			
4			
5			
6			

3. 기업신용도

가. 신용도 등급 :

나. 증빙서류(이미지파일)



정선군 공고 제2016-2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증산농공단지 내의 산업용지 및 공장 소유자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및 준수사항 시정명령 하고자 배달증명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03. 30. ~ 04. 13. (15일간)

□ 공고내용 : 산업집적법에 따른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시정명령

가. 내 용 : 2016. 05. 10.까지 입주계약 체결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위 기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됨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불능 대상자 명단 : 5명

연번	지 번 (리·번지)	이 전 일	구분	소유자	주 소	비 고
1	무릉리 825	2003.07.31.	매매	장진기	서울 노원구 중계로 195, 105동 902호(중계동, 동진아파트)	장미의의 배우자
2	“	“	“	장미의	“	장진기의 배우자
3	무릉리 825-1	1999.10.15.	“	김정아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3길 18 (망우동)	최우석의 배우자
4	무릉리 827-1	1999.09.02.	“	최우석	“	김정아의 배우자
5	무릉리 825-2	2013.08.20.	“	이종국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길 52(이현동)	재외국민 거주자

2016. 3. 30.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16-284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6. 3. 30.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5년에는 자연재해가 3회 발생하여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나, 사유시설 피해는 강풍에 따라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 등 13농가에 26백만원, 강풍 및 집중호우에 따라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122농가에 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26농가에 1천3백8십4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3개 과소 104명으로 4년 평균보다 7명 증가하였고, 지난해('14년) 보다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자연재난, 전염병, 가축전염병)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지난해('14년)와 동일하게 9종으로 10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하였습니다.
 - 방재에 대한 의식함양과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방재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을 대상으로 총26회에 걸쳐 80명에 대한 교육과,
 -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재난안전관리 의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에 12회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하였으며,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가축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주요 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우리군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17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시설물 76개소, 건축물이 94개소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 45, B등급 112, C등급 12개소, D등급 1개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지시설 정비예산은 전년대비 27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총 275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의 수방자재를 확보·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22개소, 보건소 1개소에 315개의 병상과 45명의 의사 및 79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30,300여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74개의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를, 응급복구 장비는 굴삭기 등 129대, 산불진화장비 헬기 1대 임차배치 및 동력펌프 등 1,430점(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기술인력(기능포함)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51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5,878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최저적립액은 315백만원으로 10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15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956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5년 평균 488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310백만 원이 감소한 351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8등급으로 지난해 진단 결과와 동일하였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대상(23개) 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4개시설이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각종 장비 등을 보호하고자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과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그에 비교해 구조적인 재해 대응능력 부분은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더욱 보완하여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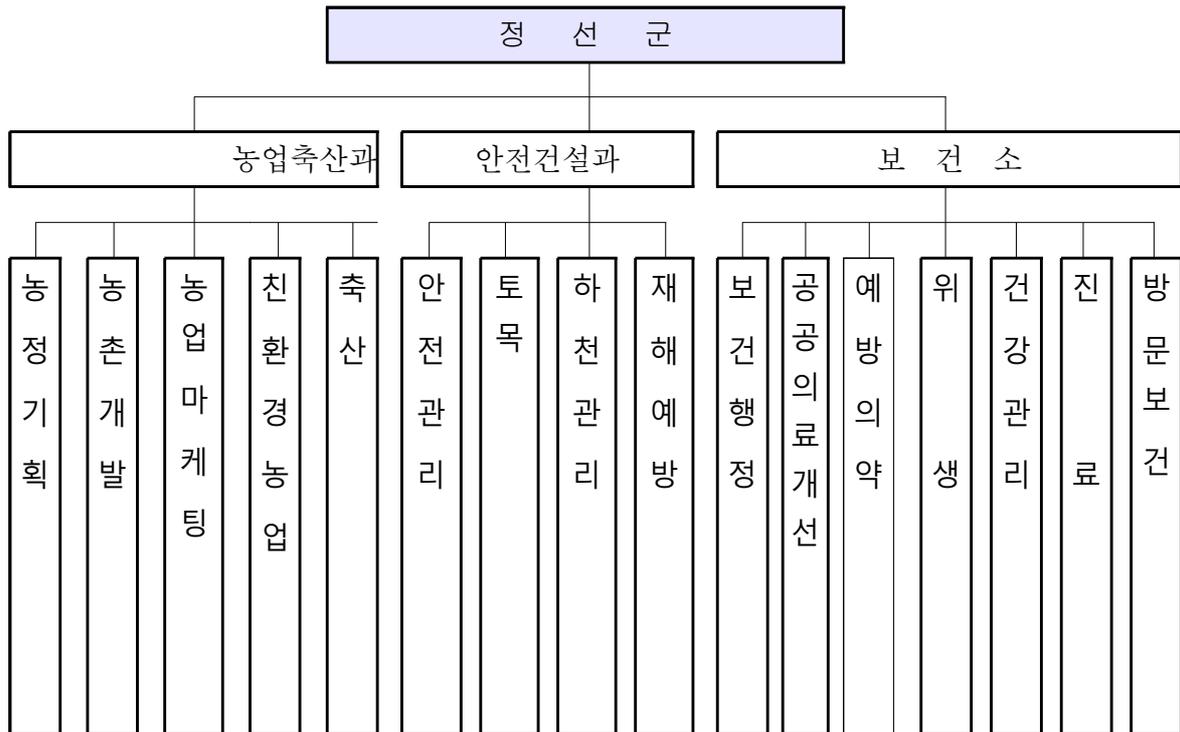
(단위 : 건 / 천원)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5. 3. 9. ~ 3. 12.	강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1 / 4,950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1 / 1,500	
'15. 5. 11. ~ 5. 14.	강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12 / 21,328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9 / 9,435	
'15. 8. 23. ~ 8. 27.	호우 · 태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122 / 4,955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16 / 2,908	

나.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기구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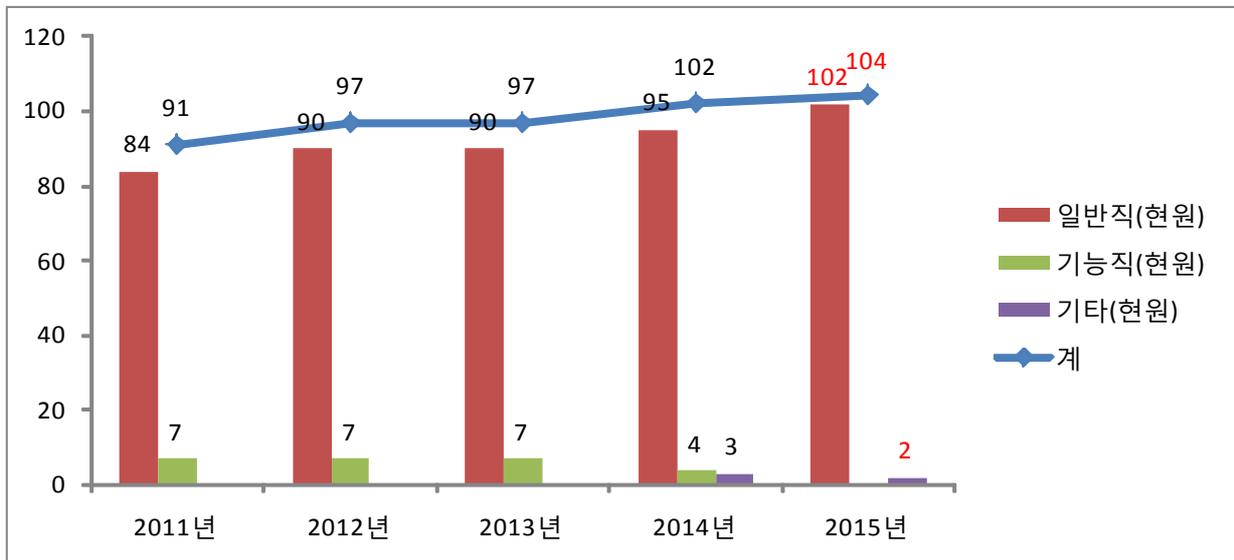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7	105		4	22	36	27	9		2
	현원	104	102		4	40	38	16	4		2
농 업 축산과	정원	22	20		1	6	7	3	3		2
	현원	22	20		1	8	7	3	1		2
안 전 건설과	정원	21	21		1	6	7	5	2		
	현원	20	20		1	6	6	5	2		
보건소	정원	64	64		2	9	23	21	9		
	현원	62	62		2	26	25	8	1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1	97	97	102	104
일반직(현원)	84	90	90	95	102
기능직(현원)	7	7	7	4	-
기 타(현원)	-	-	-	3	2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재난의 다양화 등에 따른 인원보강으로 인력이 증가하였음

(3)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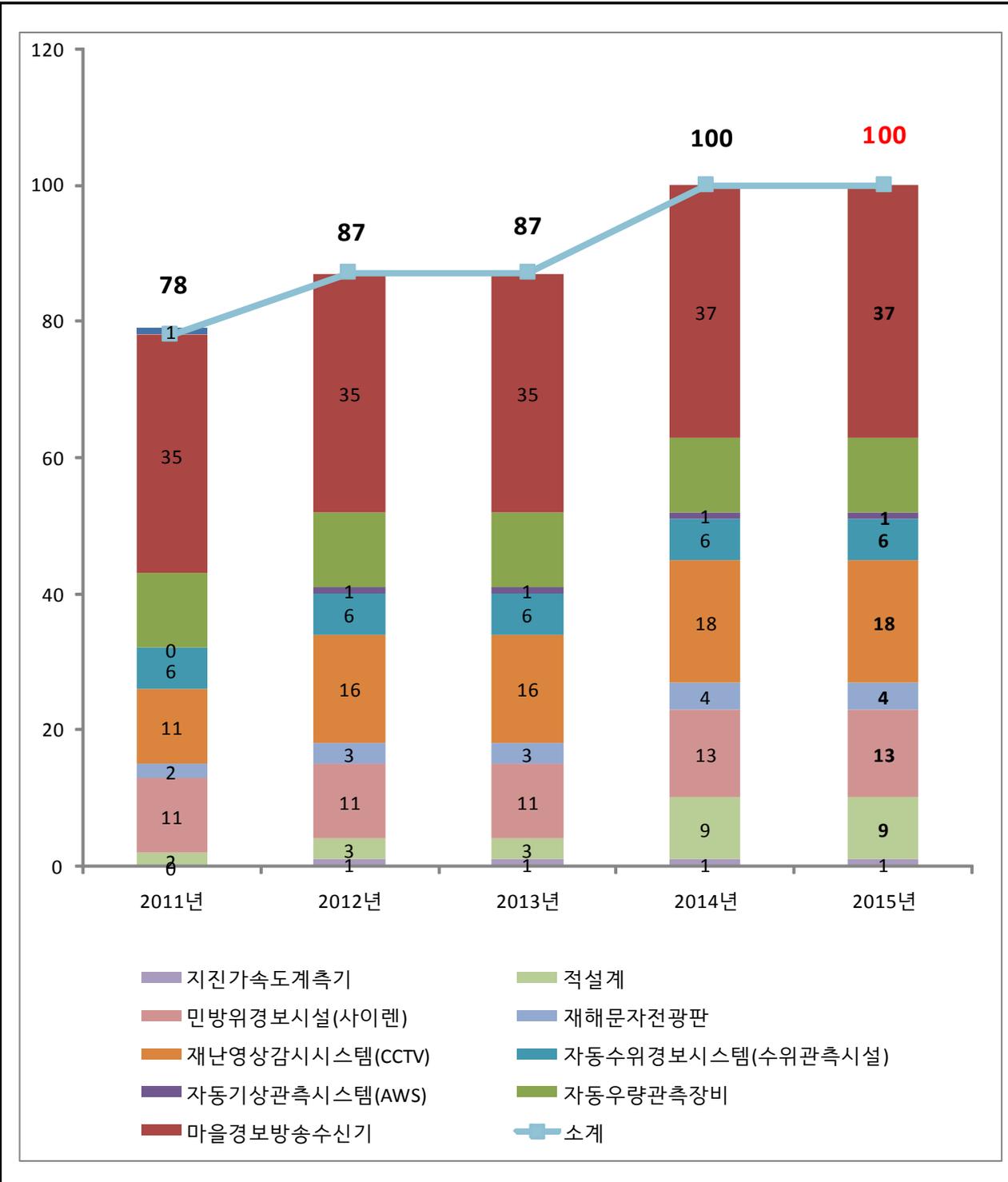
구 분	개소	설치장소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7	정선읍 가수리외 36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	정선읍 북실리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정선2교외 5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8	역전배수펌프장외 1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3	정선군청외 12개소
적설계	9	임계면 백복령외 8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5	35	35	37	37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1	11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	1	1	1	1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6	6	6	6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1	16	16	18	18
재해문자전광판	2	3	3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11	13	13
적설계	2	3	3	9	9
지진가속도계측기	0	1	1	1	1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설치 후 유지관리를 통한 예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 및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기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 등을 시행하여 관리하였고, 추가 설치는 없었음.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직무교육	'15. 2. 6	국민안전처	1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 교육	'15. 2. 13	국민안전처	2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15. 3. 2	정선군	2	자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담당자 실무교육	'15. 3. 5	국민안전처	1	
안전체험교육	'15. 3.17~ 3.18	강원도 인재개발원	6	
감염병관리 FMTP II 교육	'15. 3월~11월	질병관리본부	1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	'15. 5. 21	강원도	1	
'15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	'15. 5.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15년 제3기 재난관리신규과정 교육	'15. 6. 8.~ 6.1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지역자율방재단(구호분야) 교육	'15. 7. 16	국민안전처	1	
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15. 9.14~ 9.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지진방재실무과정	'15. 9.14.~ 9.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기상재해 이해과정	'15. 9.17~ 9.18	기상청	1	
자연재해관리실무	'15. 9. 2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15. 10. 21	국민안전처	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사이버)	'15.11. 2~11.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신종감염병 위기대응훈련	'15. 11. 10	강원도	1	
침수흔적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	'15. 11. 26	국민안전처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교육	'15. 11. 26	국민안전처	2	
재난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훈련	'15. 12. 4	강원도	1	
하반기 공직자 안보교육	'15. 12. 4	정선군	17	자체
재난예방업무 실무교육	'15.12. 8~12. 9.	국민안전처	3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5. 6. 3. ~ 6. 4.	가리산방재마을	8	강원도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	
'15. 6. 17.	정선군청	9	자율방재단장 실무교육	정선군	
'15. 10. 26. ~ 10. 27.	파인리조트	2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국민안전처	
'15. 11. 24.	원주 농업기술센터	10	'2015년 하반기 지역자율 방재단 구호분야 교육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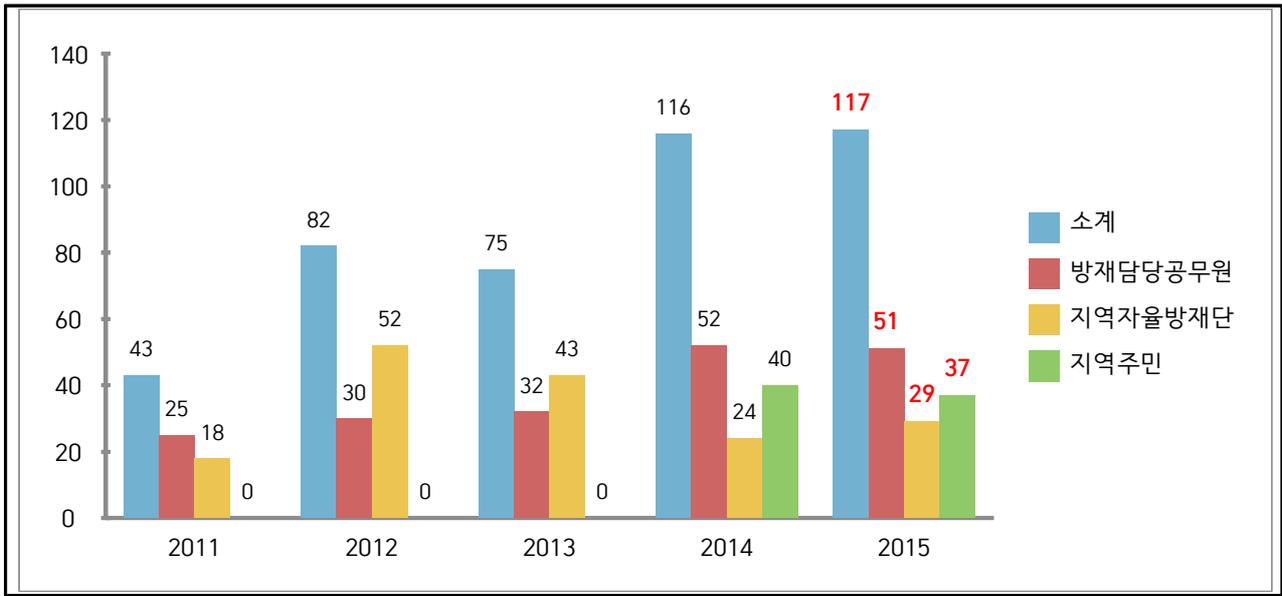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도 민 안전체험교육	'15.12.15~ 12.17	도 소방학교, 태백 365 세이프타운	37	체험·실습 (재난상황 대피훈련, 응급처치 훈련 등)	강원도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3	82	75	116	117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25	30	32	52	51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18	52	43	24	29
지역주민 교육·훈련	-	-	-	40	37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의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군민 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5. 10. 5.	서울	1	안전정책혁신 현장모니터링단 출범식 참석	국민안전처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31	3	3	-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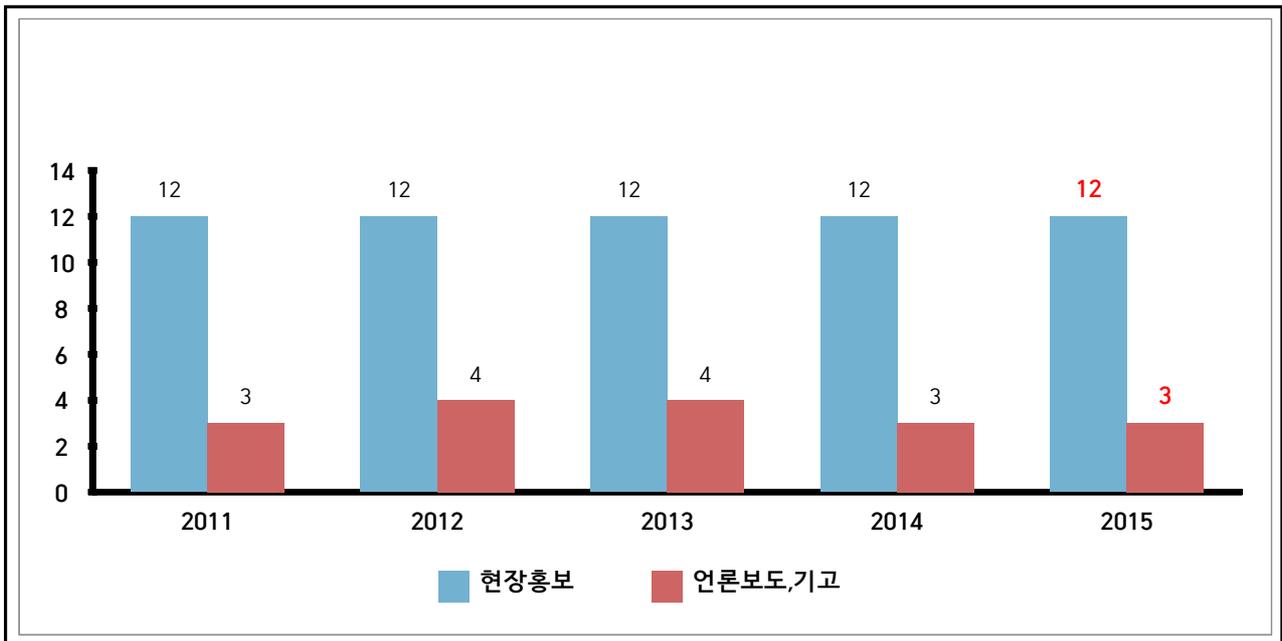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1. 7	정선아리랑시장 일원	50	
2	"	설 연휴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홍보	2. 12	정선아리랑 시장일원	50	
3	"	봄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3월	군 관내	40	
4	"	지역축제 안전점검 (정선토속음식축제, 화암약수제)	4.22	북평면, 화암면	6	
5	"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안전문화 캠페인	5.8	정선공설운동장 안전체험장일원	2,000	
6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및 안전문화 캠페인	6.12	정선아리랑시장 일원	50	
7	"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 캠페인	7.7	정선읍 밤바위 일원 휴터, 용마소 등	80	
8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합동 홍보	8.6	아우라지 강변 일원	60	
9	"	추석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9.22	정선아리랑시장 일원	60	
10	"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합동 홍보	10.7	가리왕산 등산로 일원	40	
11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11.12	정선아리랑 시장 일원	50	
12	"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12.22	정선아리랑시장 일원	80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정선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확대	- 농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예산 확대	'15.02.27	강원도민일보	
2	정선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제로화에 도전	'15.06.02	강원도민일보 아시아뉴스통신	
3	정선군 위법행위 점검	- 총 750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점검	'15.11.04	강원일보 뉴시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3	4	4	3	3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 증가원인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은 매달 진행되는 행사로써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기여했으며 언론보도는 전년도와 같음.

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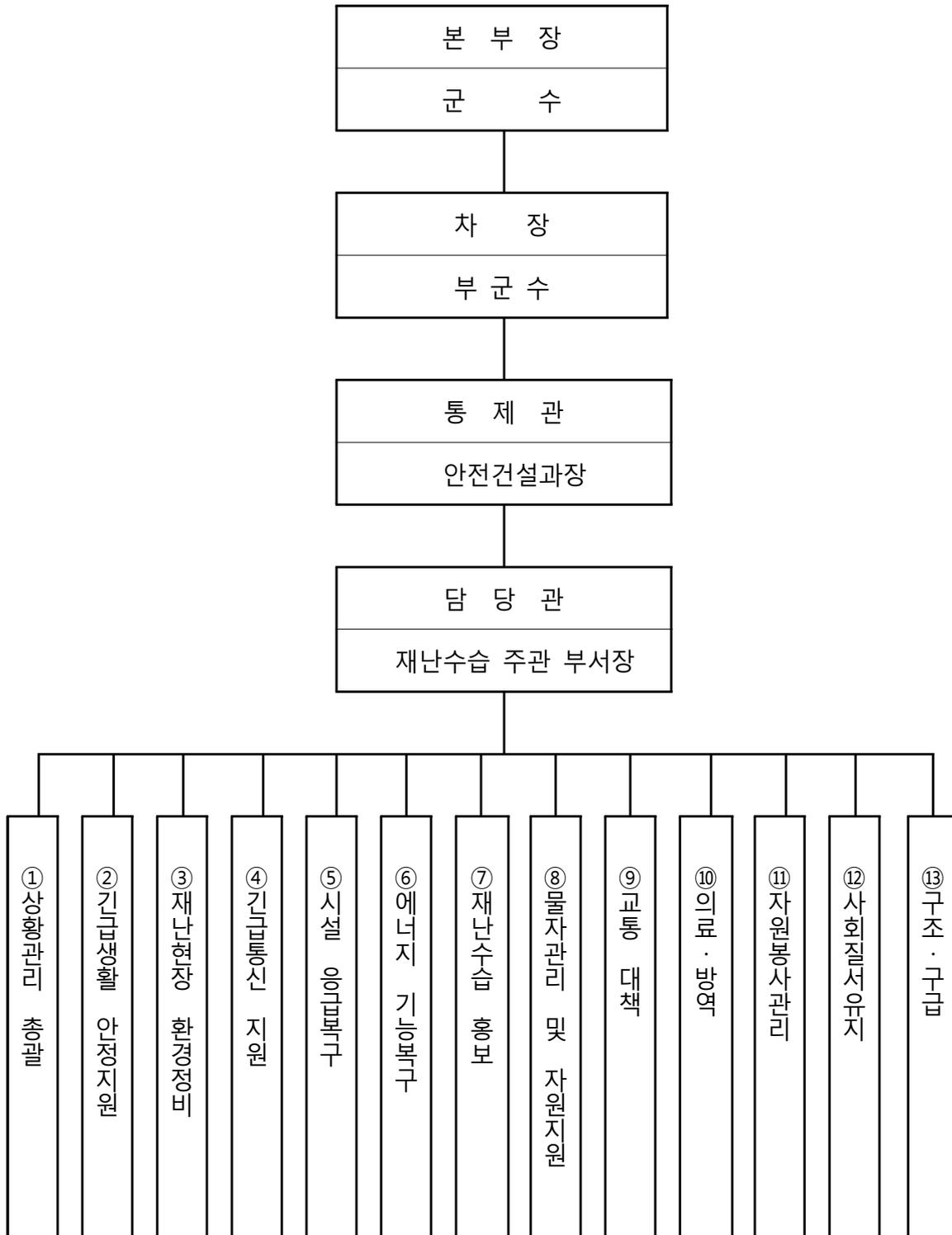
1)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군수 • 위 원 :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 11조 제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법 제 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민간 • 위 원 :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재난 예·경보 운영	같은 법 제 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 •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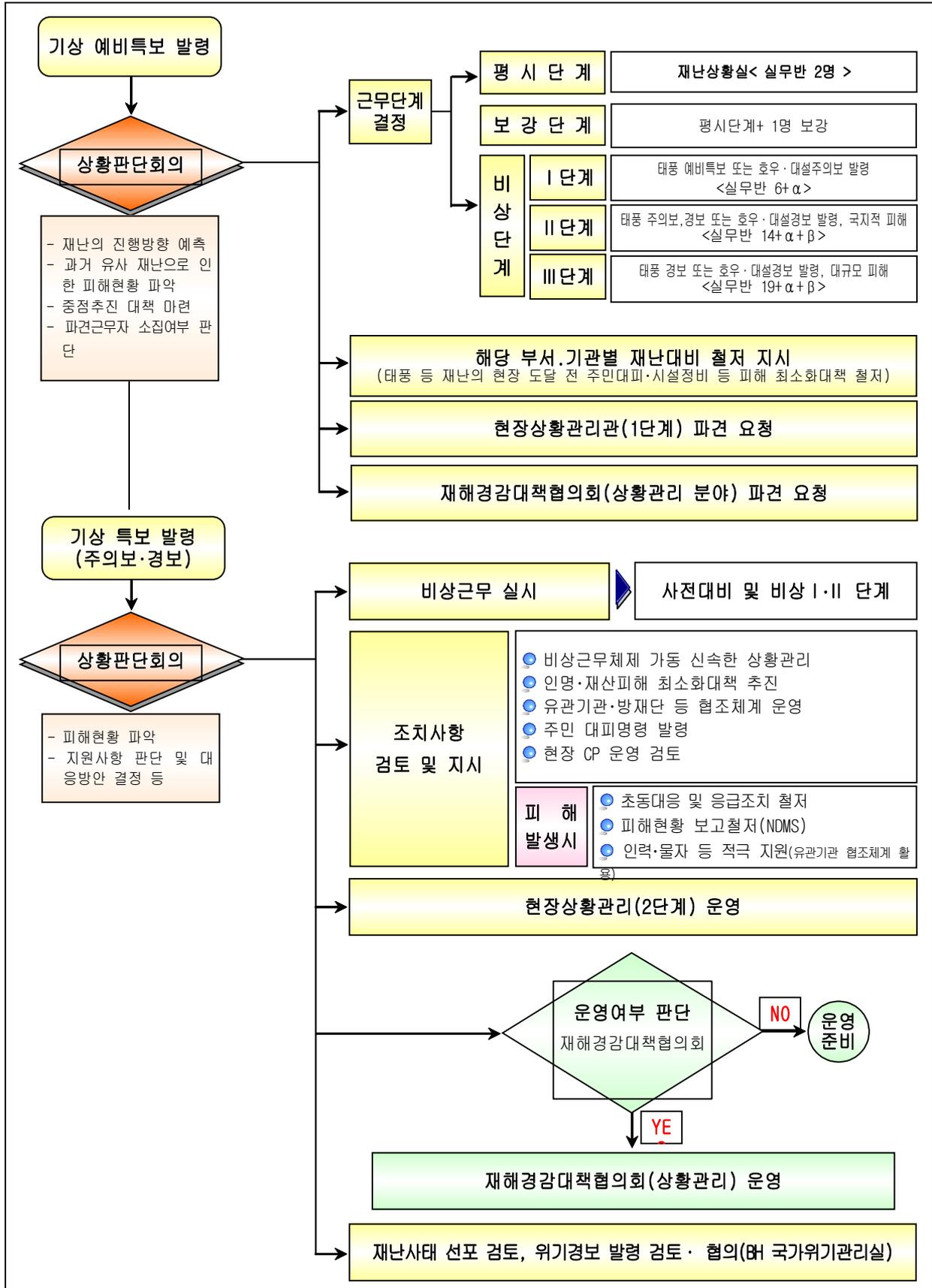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TV 방송 모니터링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처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인명피해 상황관리 6. 재산피해 상황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자 치 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생활 지원과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 경 산림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자 치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해 당 부 서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지 역 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기 획 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2.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 전 건설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수송차량 지원 3. 긴급수송 지원	도 시 건축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및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자 치 행정과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자 치 행정과
구조·구급	1. 재난지역 구조, 구급 지원 2.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소

◆ 풍수해 재난·재해 대응 개념도



◆ 비상근무 기준

구 분	근 무 기 준		인 원	근 무 조 편 성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	태풍	◆ 24시간 상황관리	2명	◆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 안전건설과 2, 당직근무자 3 (주간 상황실, 야간 당직실)
	호우 대설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	태풍	◆ 태풍정보 발표 시	3명	◆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 재난상황실 내근근무자 1명 * 안전건설과 2, 자치행정과 1
	호우 대설	◆ 호우·대설 예비특보		
비 상 1단계	태풍	◆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6명 +α	◆ 총괄지휘 : 안전건설과장 ◆ 상황총괄반 : 6 ◆ 비상지원반 : α
	호우 대설	◆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 시	6명 +α	
비 상 2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 시	14명 +α +β	◆ 총괄지휘 : 부군수 ◆ 상황총괄반 : 7+α ◆ 상황지원반 : 3+α ◆ 행정지원반 : 1+α ◆ 비상지원반 : 3+α+β
	호우 대설	◆ 호우·대설 경보 발효 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시		
비 상 3단계	태풍	◆ 태풍 경보 발령 또는 ◆ 호우·대설 경보 발효 시 ◆ 대규모 피해 발생 시	19명 +α +β	◆ 총괄지휘 : 군수 ◆ 상황총괄반 : 8+α ◆ 상황지원반 : 3+α ◆ 행정지원반 : 1+α ◆ 비상지원반 : 7+α+β
	호우 대설			

○ 필요 유관기관(11) : 정선 경찰서, 정선 소방서, 강릉기상대, 정선 국유림관리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제8087부대 1대대, 정선교육지원청, KT 정선지사,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대한적십자 정선봉사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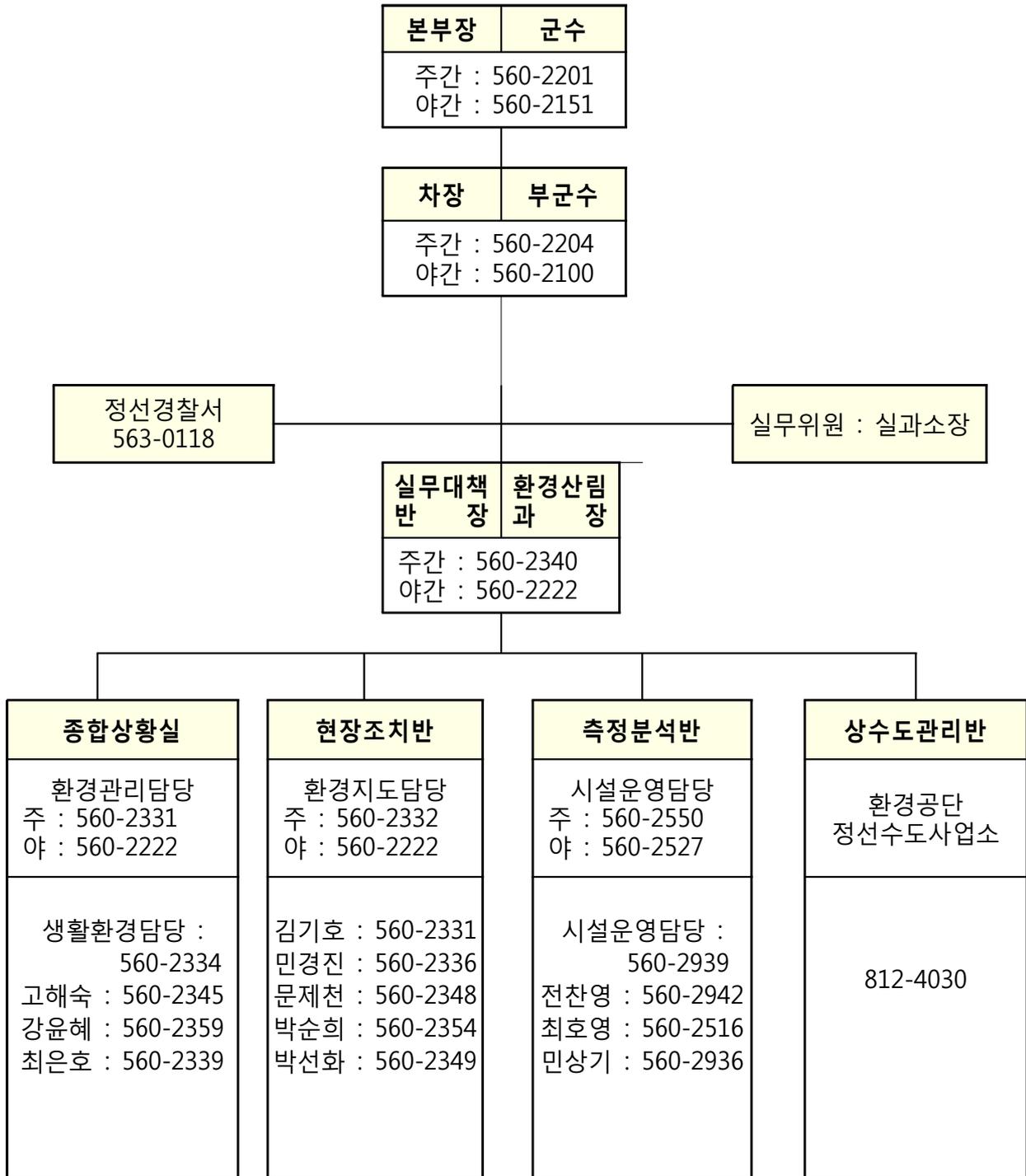
◆ 대응실무반 편성

반별	단계	비상단계 (Ⅰ)		비상단계 (Ⅱ)		비상단계 (Ⅲ)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계			9		17		33
총괄지휘		안전건설과장	1	부군수	1	군 수	1
상황총괄반				(반장) 안전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1	(반장) 안전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1
	상황총괄팀	(반원) 안전건설과	1	(반원)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1 1	(반원)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1 1
	상황지원팀	(반원) 안전건설과	2	(반원)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2 1	(반원)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2 1
	소 계			3		6	
행정지원반				(반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반원)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1 1 1	(반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반원)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1 1 1
소 계					3		3
구조 · 구급반						(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반원) 세무회계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1 1 1 1
소 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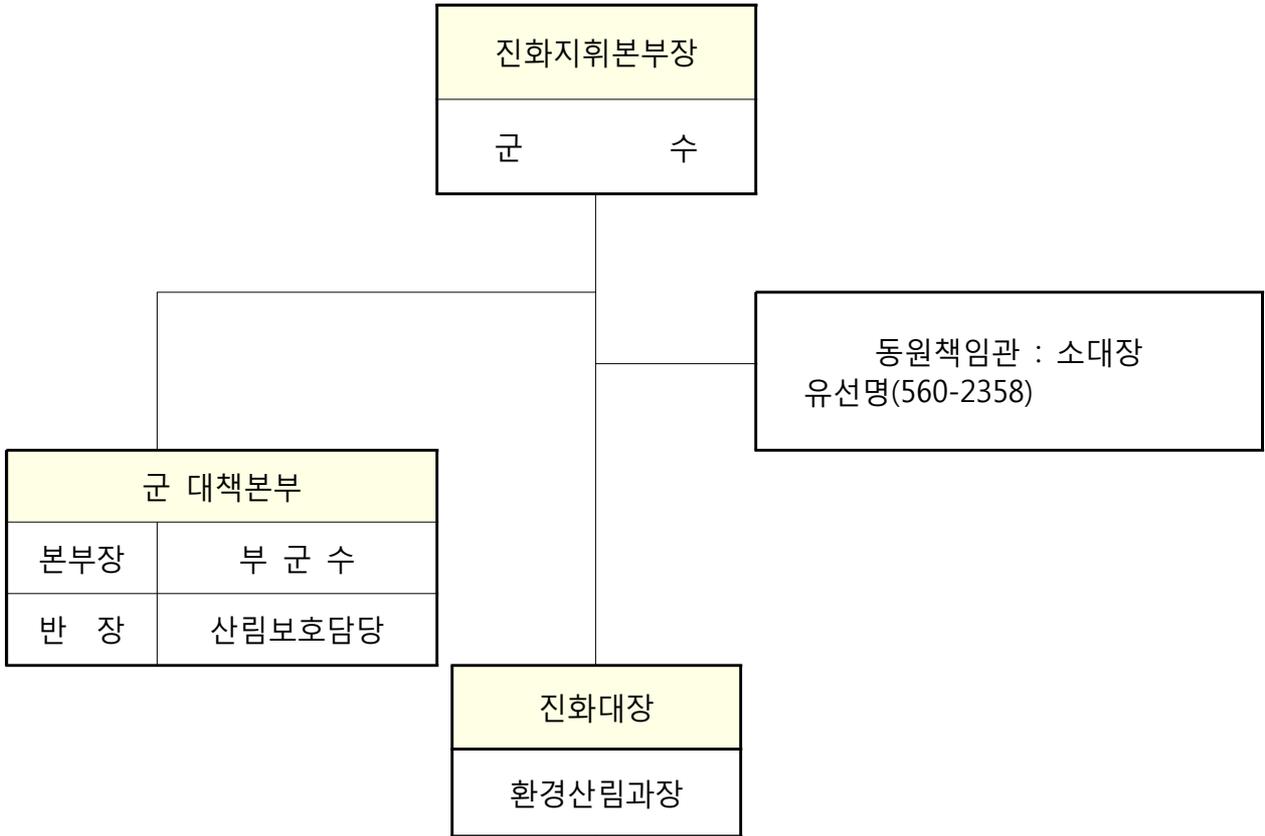
단계 반별	비상단계(I)		비상단계(II)		비상단계(III)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비상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1	(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1	(반장) 농업축산과장	1
	농업축산과	1	보 건 소 장		지역경제과장	1
	보 건 소	1	(반원)		(반원)	
	정선경찰서	1	주민생활지원과	1	도시건축과	1
	정선소방서	1	농업축산과	1	주민생활지원과	1
			환경산림과	1	농업축산과	1
			보 건 소	1	농업기술센터	1
			정선경찰서	1	수질환경사업소	1
			정선소방서	1	보 건 소	1
					정선경찰서	1
					정선소방서	1
					8087부대1대대	1
					정선교육지원청	1
					자율방재단	1
	소 계	5		7		13
자원봉사 지 원 반					(반장) 문화관광과장	1
					도시건축과장	
				(반원)		
				주민생활지원과	1	
				환경산림과	1	
	소 계				3	
홍보지원반					(반장)	
					환경산림과장	1
				(반원)		
				환경산림과	1	
				기획감사실	1	
	소 계				3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정선군 환경오염사고처리 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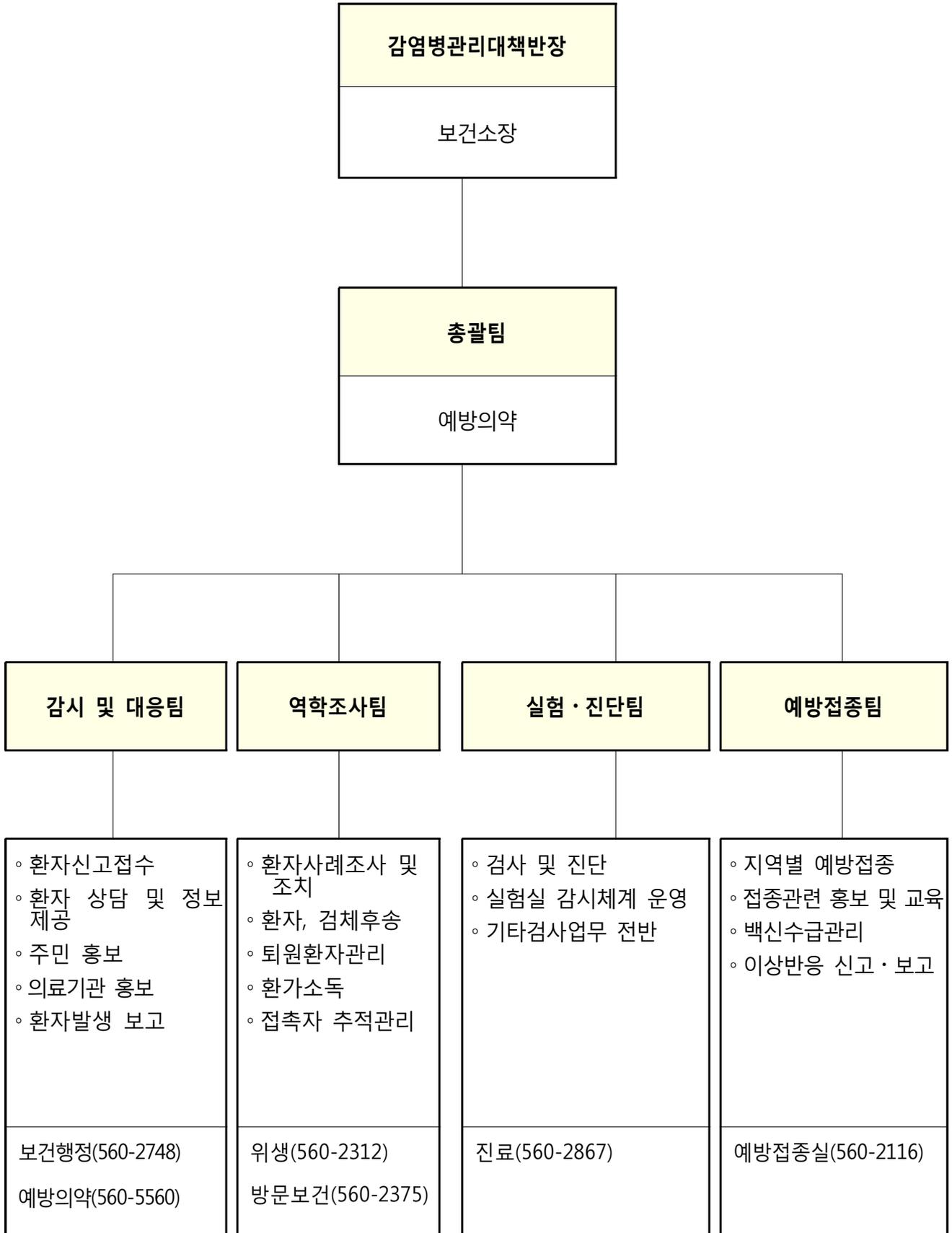


○ 정선군 산불 초동진화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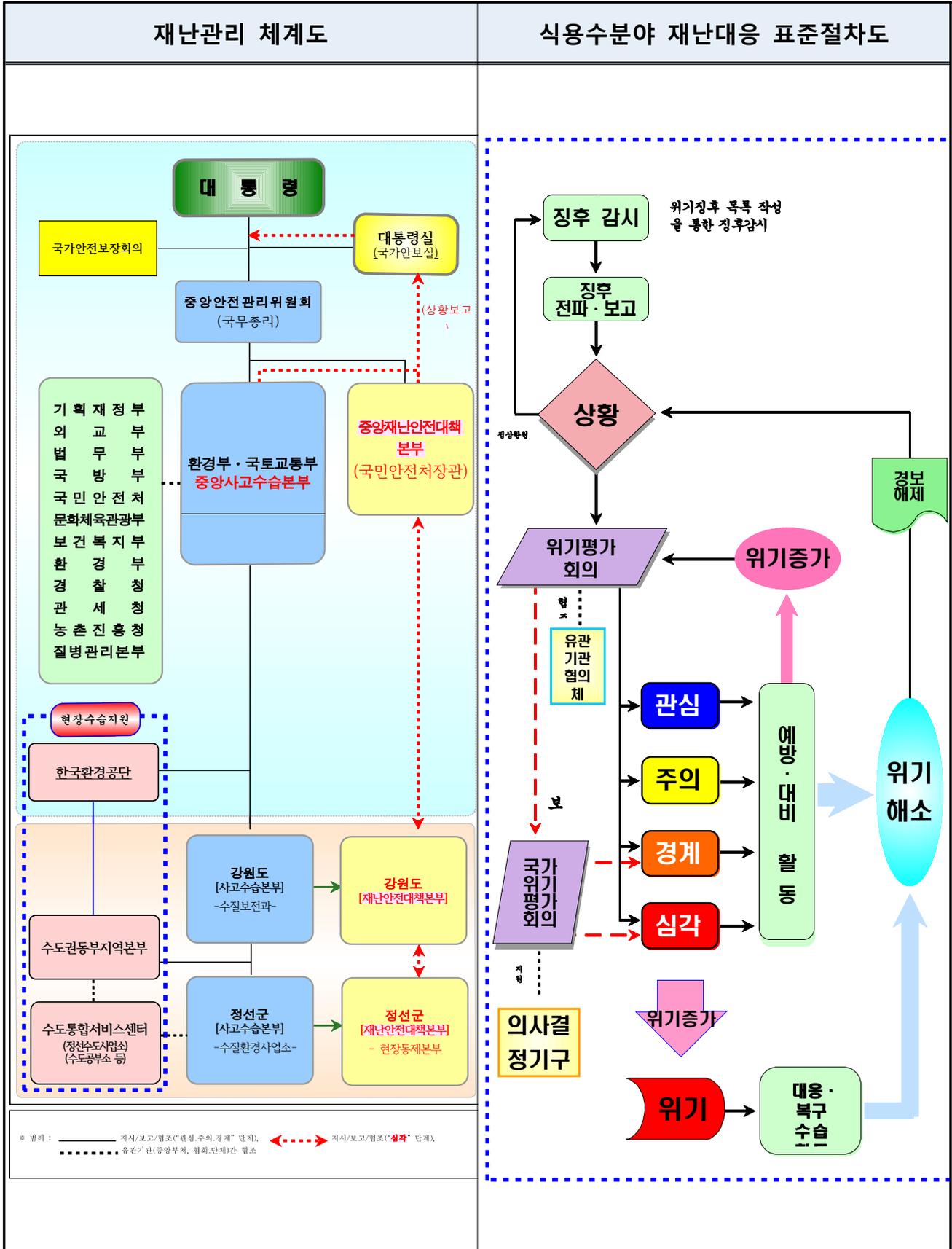


진화 1반(7명)			진화 2반(6명)		
반장	산림보호담당		반장	산림조성담당	
조별	성 명	연락처	조별	성 명	연락처
1조	신장근	560-2955	2조	이광은	560-2231
	김동민	560-2265		신석하	560-2444
	박호준	560-2484		어승호	560-2460
	김영철	560-2696		이경진	560-2449
	최승환	560-2992		라태윤	560-2278
	김동주	560-2256		현준희	560-2571
	최현철	560-2441			

○ 정선군 감염병 관리 대책반



○ 정선군 감염병 관리 대책반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단체	연락처	주요 임무
제8087부대1대대 (교환)	562-0113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560-8112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전력공급팀)	560-3273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 가설 ○ 필요시 재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 기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과 (정선봉사협의회)	033-256-9512 (010-3888-5815)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 농협급식 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정선지사 (특별기동팀)	562-0060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 파악 ○ 통신 응급소통
정선소방서 (예방팀)	560-6420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560-5381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의 교통통제, 피해지역 주민대피 ○ 실종자 수색 및 사망자 신원확인 등
강릉기상대	033-650-0430	○ 기상정보 제공 ○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자 파견
정선국유림관리소	560-5530	○ 오지대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산사태위험지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010-5361-9791 (단장)	○ 자연재해 사전 예찰활동 실시 ○ 피해발생시 인력 및 장비 지원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민방위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4.17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 유형별

(단위 : 개소)

총계	시설물						건축물							
	소계	교량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형목사장 대토공사장	소계	공청사	아파트	연립택	판매시설	형박시설 대숙시	형욕탕 대목욕	유동시설
		래프팅 시설	-	-	-	-		중여시 합객시설	공연시설	관람시 전시	의료 시설	형축 대건물	형축사 대건공장	중단된공 사장
170	76	48	1	11	2	1	94	12	49	21	3	0	0	1
		13	-	-	-	-		3	1	0	2	0	1	1

○ 등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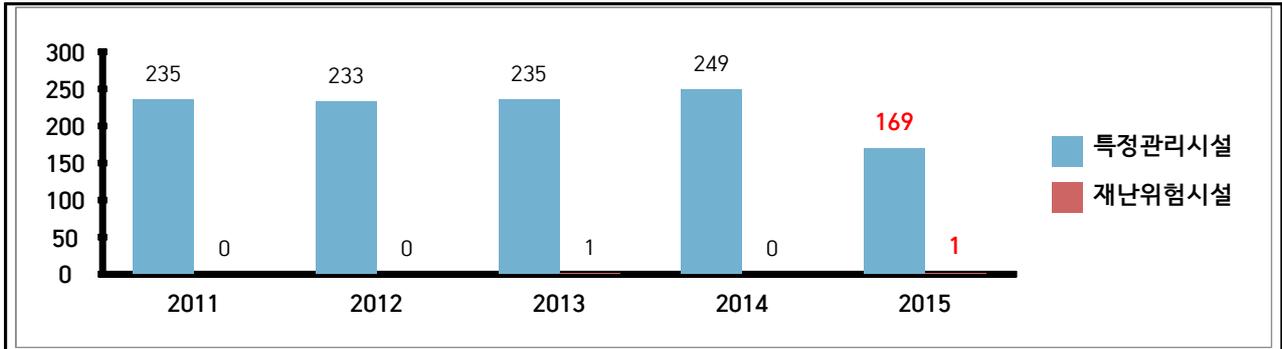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170	169	45	112	12	1	1	-	
시설물	76	75	38	31	6	1	1	-	
건축물	94	94	7	81	6	-	-	-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35	233	235	249	169
재난위험시설	-	-	1	-	1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으로 특정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대상 축소로 특정관리대상시설 개소 감소.

○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 2016년 4분기 보수보강 계획임.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정비

(가)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5.01.01 15.06.30	249	249	-	관리주체 해당부서	-
하반기	15.07.01 15.12.30	170	170	-	관리주체 해당부서	-

○ 정비실적(해당없음)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	해	당	없	음	-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아 정비실적은 없으나 상·하반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추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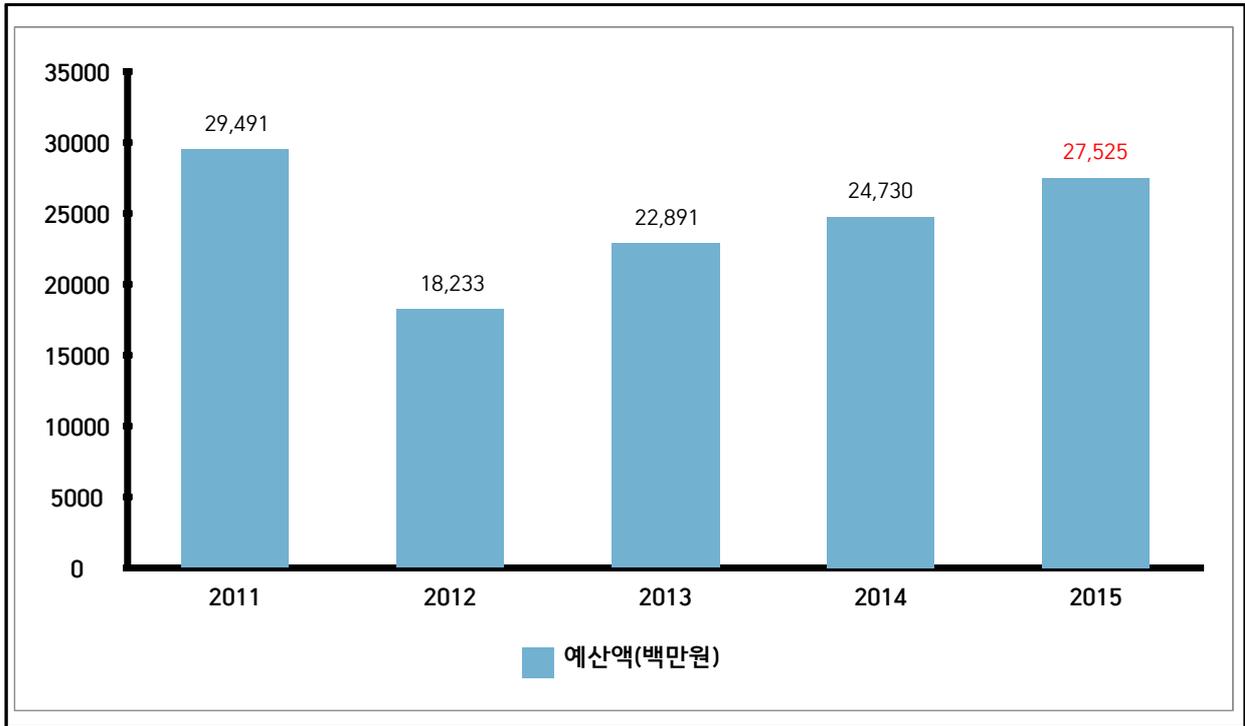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외 2개소	용수개발	2015년	227	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외 8개읍면	배수로정비	2015년	96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수리시설정비	정선읍외 4개읍면	수리시설정비	2015년	25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용배수로정비	북평면, 여량면	용수로정비	2015년	1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시설유 지보수	정선읍외 4개읍면	배수로, 농로	2015년	2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사방댐 설치공사	화암면 외 3개 읍면	9개소	2015년	1,984	산림재해예방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고한읍 고한리	호안정비 L=0.43km	2015년	4,012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정선읍 남면 임계면	호안정비 L=3.60km	2015년	3,490	소하천재해예방
기성제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호안정비 L=72.22km	2015년	200	하천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정선읍	저류조 2,180톤	2015년	3,154	도시침수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한읍 고한11리	철거 및 세천정비 121m	'15~16년	1,310	붕괴위험 해소
	고한읍 고한19리	하천정비 L=200m	'14~16년	2,000	침수위험해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선,신동	하수관로 22.62km	2015년	4,330	수질개선 및 침수예방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선,남면	처리시설 Q=4,400톤/일 20KL/일	2015년	5,308	수질개선 및 침수예방 등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1 ~ 201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9,491	18,233	22,891	24,730	27,525



↳ 재난경감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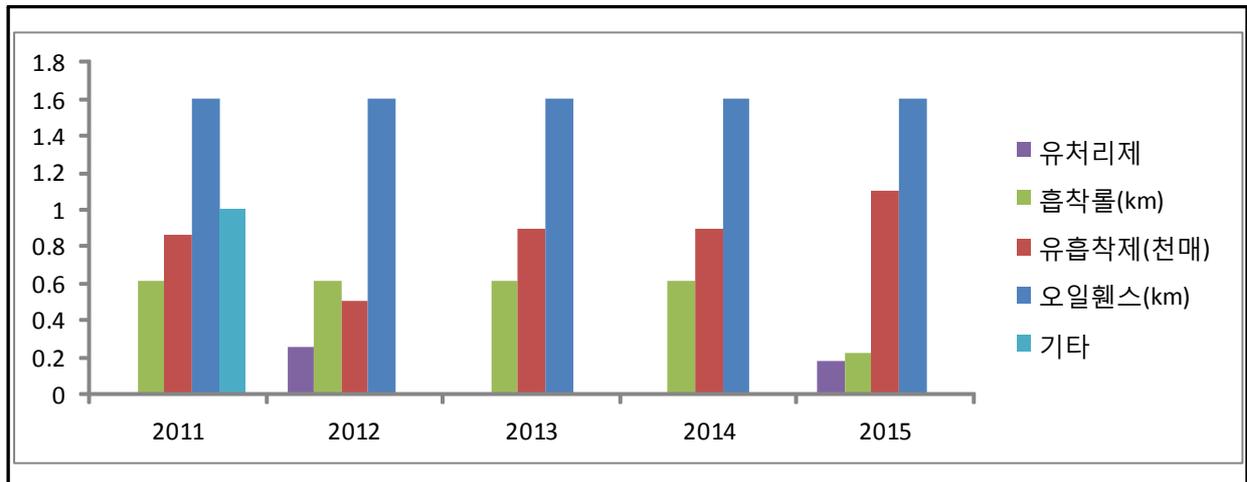
-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확보액은 2,795백만원 증가(10%)함.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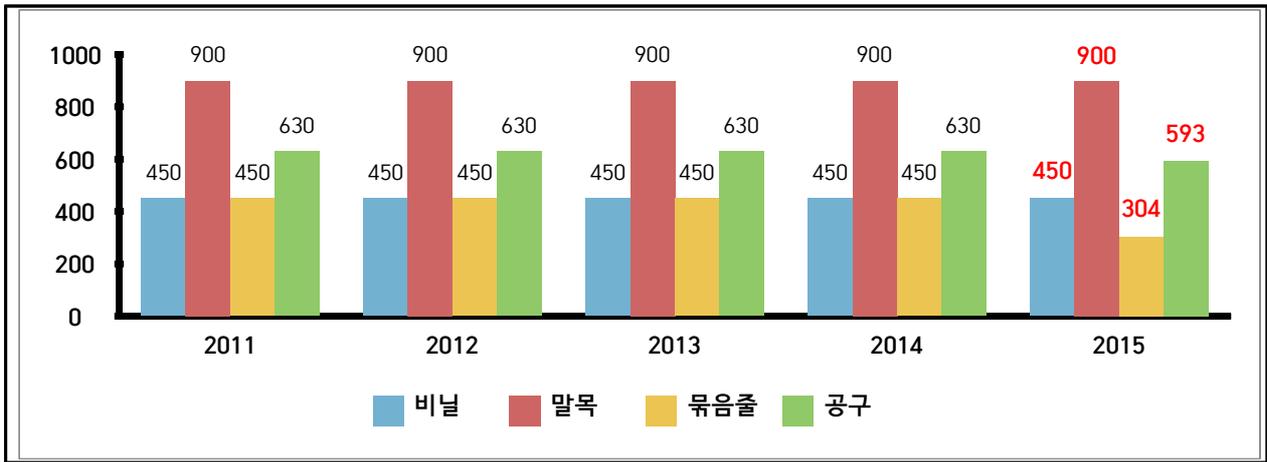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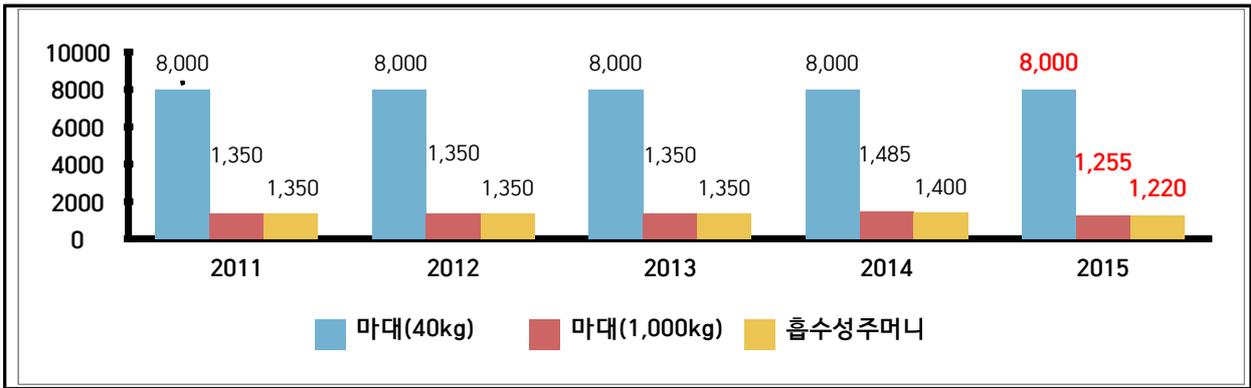
계	오일웁스 (km)	유흡착제 (천매)	흡착롤 (km)	유처리제 (kℓ)	기타
총계	1.6	1.1	0.22	0.18	

방재물자 종류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76	2.968	3.116	3.116	3.1
오일웬스(km)	1.6	1.6	1.6	1.6	1.6
유흡착제(천매)	0.86	0.5	0.9	0.9	1.1
흡착롤(km)	0.616	0.616	0.616	0.616	0.22
유처리제(kℓ)	-	0.252	-	-	0.18
기 타	-	-	-	-	-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마대(40kg)	8,000	8,000	8,000	8,000	8,000
마대(1,000kg)	1,350	1,350	1,350	1,485	1,255
비닐(PE필름)	450	450	450	450	450
흡수성주머니	1,350	1,350	1,350	1,400	1,220
말목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450	450	450	450	304
작업공구	630	630	630	630	593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가가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구분	개소	의사(명)	간호사(명)	구급차(대)	병상수(개)	영안실(실)
합 계	41	45	79	4	315	2
병 원	22	29	52	2	315	2
보건소	1	3	12	2		
기타(지소 및진료소)	18	1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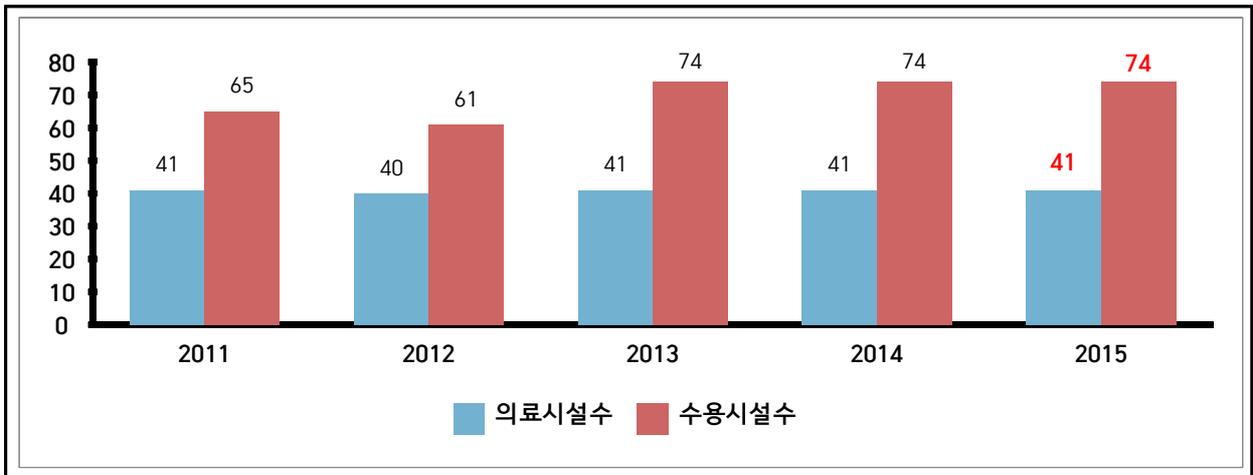
○ 수용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수용시설	74	30,300	26	29,200	26	268	11	151	2	352	9	329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료시설수		41	40	41	41	41
수용시설	개소	65	61	74	74	74
	수용인원	7,639	7,639	8,220	8,220	30,300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가 원인

- 전년도와 비교하여 시설의 증감이 없음.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2	1	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종)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 덤프	추레라	기타
총계	129	43	75	2	5	2	2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1,466	-	1	11	4	1,430

○ 기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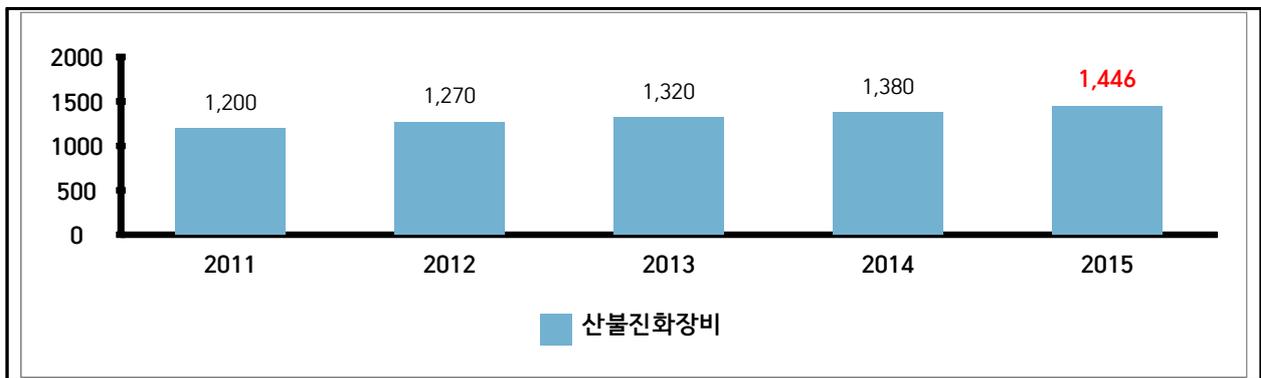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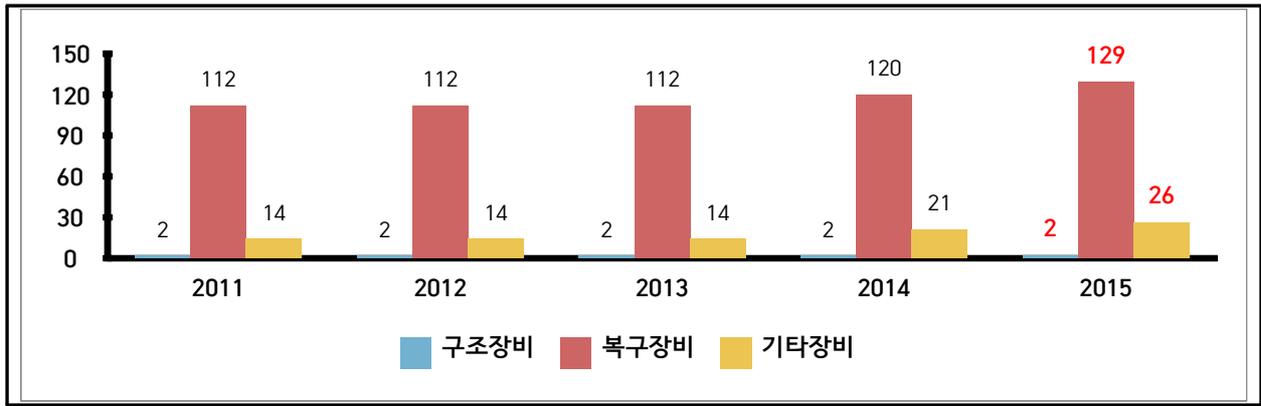
(단위 : 대)

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비 고
26		2	12	3		1	8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조장비	2	2	2	2	2
복구장비	112	112	112	120	129
산불진화장비	1,200	1,270	1,320	1,380	1,446
기타장비	14	14	14	21	26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은 개인진화장비 구매에 따른 증가가 있고, 소방지원활동 증가에 따른 소방서 지역대에 수중펌프 등 추가 배치됨.

다. 인력 지정 현황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9	7	2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42	9	1	3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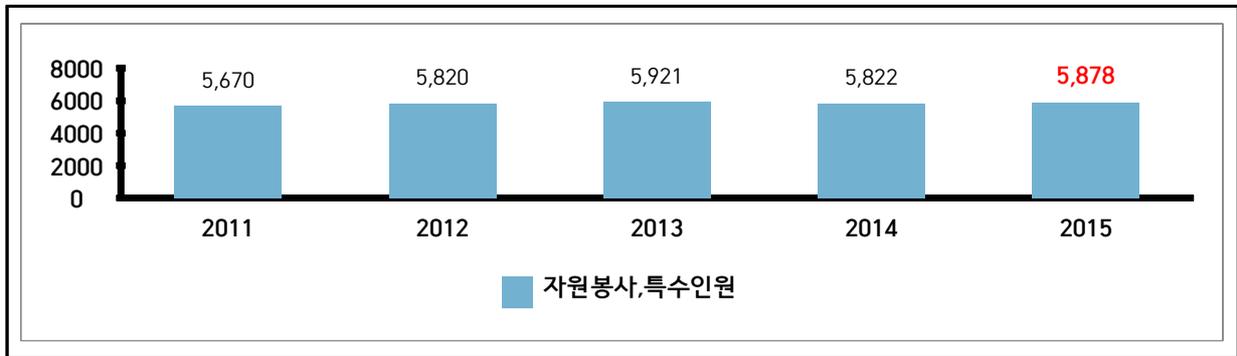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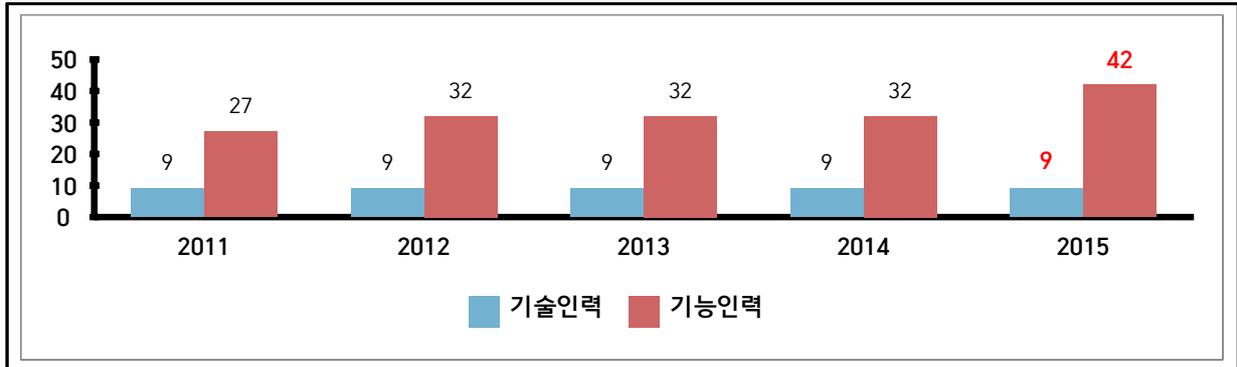
(단위 : 명)

계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기 타
5,878	291	287	20	49	14	5,217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원봉사단체	5,670	5,820	5,921	5,822	5,878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자원봉사 단체 등의 인원변동 여하에 따라 증감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자원봉사단체 기능인력 증가.

사.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해당없음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14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23	4	-	-	17%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내진율	17	17	17	17	17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이유

- 지진발생 영향 미미 및 의식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 어려움.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이 저조한 사유

- 지진발생 영향 미미 및 의식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 어려움.

4)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실적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설치현황 없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실적없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표 지 판	안내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 정비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경보시설은 기존 재해 예·경보 시스템(58개소)를 활용가능.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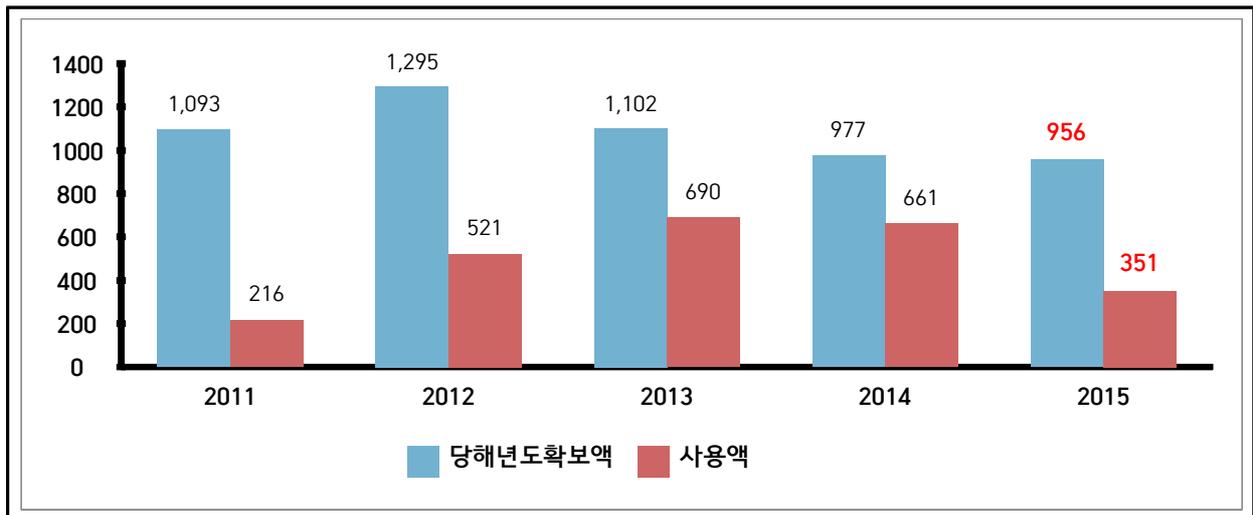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315백만원	315백만원	100%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해 당 년 도 확 보 액		1,093	1,295	1,102	977	956
사 용 액	계	216	521	690	661	351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10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7	349	500	600	341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157	133	149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41	50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2	39	-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	11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15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315백만원이고 이에 315백만원을 적립하여 10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5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956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 작성·운영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태풍,호우,설해)재난	안전건설과	2006.12.27	풍수해재난 행동요령
지진재난	안전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 화산폭발	안전건설과	2014.3.	화산폭발 행동요령
산불재난	환경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환경산림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환경산림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안전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건설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분야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응급의료분야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분야	수진환경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 운송분야	도시건축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뭄분야	안전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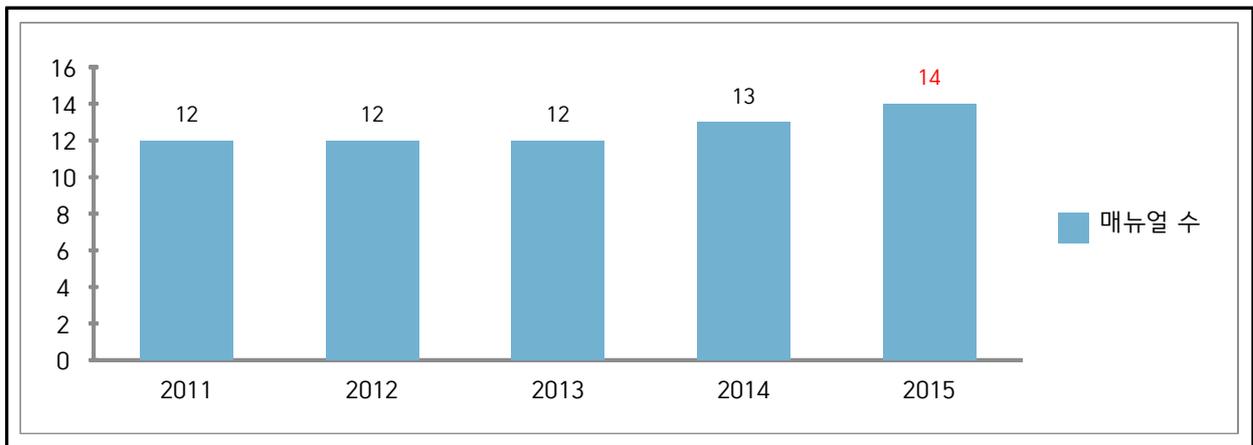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가뭄분야	2015.11.12	가뭄분야 행동매뉴얼 제정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17개분야 매뉴얼	2015.9	2015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매뉴얼 현행화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뉴얼 수	12	12	12	13	14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 매뉴얼 현행화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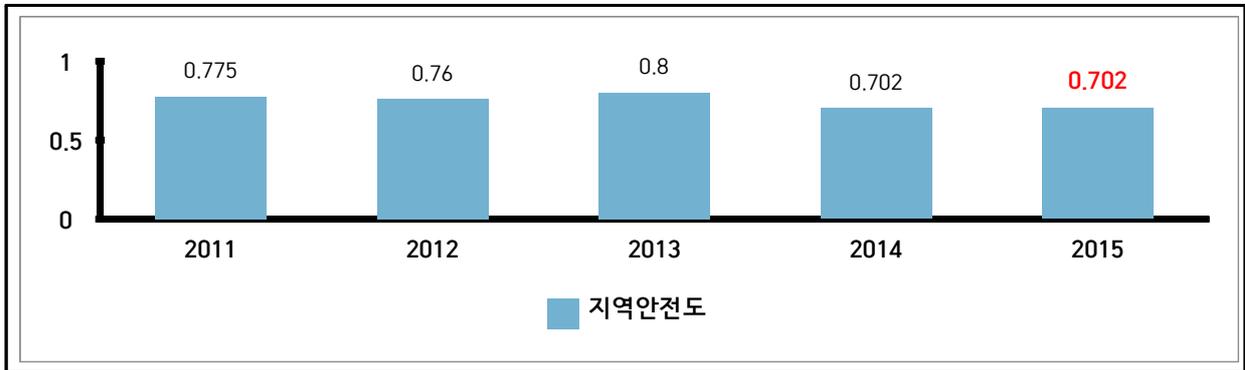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
진단결과	0.474	0.580	0.830	8

※ (안전) 1등급 < - - - - - > 10등급 (위험)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2011년	0.720	0.906	0.300	0.778	7	
2012년	0.626	0.906	0.300	0.760	9	
2013년	0.564	0.906	0.300	0.800	10	
2014년	0.542	0.577	0.829	0.702	8	
2015년	0.474	0.580	0.830	0.702	8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0.702(8등급)로 전년과 동일함.
- 분야별로는 (위험환경)은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의 감소로 2014년 보다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험관리능력)과 (방재성능)은 2014년과 동일한 것으로 진단됨.

차.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풍수해보험 가입

(가) 개 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에 대해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권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

○ 보험료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개인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정부지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필요에 따라 장·단기 계약체결 가능)

(나) 보험료 산출내역

○ 건축물 ⇨ 소유자, 가입비율(90% 경우)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63,000,000	72,000,000	81,000,000	90,000,000
계	83,300	95,200	107,100	119,000
국고 지원금	40,100	45,900	51,500	57,200
지자체지원금	7,400	8,500	9,600	10,700
주민 부담금	35,800	40,900	46,000	51,100

○ 건축물 ⇨ 소유자, 가입비율(80% 경우)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56,000,000	64,000,000	72,000,000	80,000,000
계	74,000	84,600	95,200	105,800
국고 지원금	38,900	44,500	50,000	55,600
지자체지원금	8,300	9,500	10,700	11,900
주민 부담금	26,800	30,600	34,500	38,300

○ 건축물 ⇨ 소유자, 가입비율(70% 경우)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49,000,000	56,000,000	63,000,000	70,000,000
계	64,800	74,400	83,300	92,600
국고 지원금	34,200	38,900	43,900	48,700
지자체지원금	7,200	8,300	9,300	10,400
주민 부담금	23,400	26,800	30,100	33,500

○ 비닐하우스 ⇨ 내재해형 07-단동-3, 가입비율(9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50평 (165㎡)	
	보험가입금액	5,791,500	5,791,500	2,895,75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403,300	336,100	201,600	168,000
국고 지원금	188,100	156,700	94,000	78,300
지자체지원금	33,800	28,200	16,900	14,100
주민 부담금	181,400	151,200	90,700	75,600

○ 비닐하우스 ⇨ 내재해형 07-단동-3, 가입비율(8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50평 (165㎡)	
	보험가입금액	5,148,000	5,148,000	2,574,00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358,500	298,700	179,200	149,300
국고 지원금	184,500	153,900	92,400	77,000
지자체지원금	37,600	31,300	18,800	15,600
주민 부담금	136,200	113,500	68,000	56,700

○ 비닐하우스 ⇨ 내재해형 07-단동-3, 가입비율(7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50평 (165㎡)	
	보험가입금액	4,504,500	4,504,500	2,252,25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313,600	261,400	156,800	130,700
국고 지원금	161,600	134,700	80,900	67,400
지자체지원금	32,900	27,400	16,400	13,700
주민 부담금	119,100	99,300	59,500	49,600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건설과 (담당자 : 주창수, 전화 : 033-560-24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